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51
----------	-----

2025. 4. 30.(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상식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상식 의원)

가. 제안사유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노출에 대응한 안전관리가 요구됨.
-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아동의 건강을 위해 급식시설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 체계 구축 및 운용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방사성물질, 급식시설)의 뜻을 규정함. (안 제2조)
-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매년 검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식재료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기관을 두고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검사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방사성물질 검출 시의 조치 및 검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급식시설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특히 방사성물질 노출에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급식 식재료가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하도록 검사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급식시설 이용자와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총15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 체계는 다음과 같음.

	조항	규정내용(조 제목)
총칙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실체규정	제4조	검사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	담당기관의 운영 등
	제6조	정기 및 수시검사 등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의 임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위원회 회의 등
	제12조	자료조사와 의견청취 등
	제13조	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관한 조치
	제14조	정보 공개
보칙규정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부칙규정	부칙	시행일

- 안 제2조는 "방사성물질"과 "급식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방사성물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을 준용하여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삼중수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급식시설"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없음.
-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방사성물질 검사 관련 도지사의 책무와 검사 계획의 수립, 담당기관 지정, 정기 및 수시검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급식 식재료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여 안전성 확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 검사항목을 세습, 요오드로 명확히 하여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함.
-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학부모단체, 환경단체, 교육단체, 학계 전문가, 도의회 추천 위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함. 또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4 이하로 구성하였음.
-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방사성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의 조치사항과 검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또한, 검사결과를 충청북도교육청 및 시·군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 방사성물질 검사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서 의미가 있음
- 급식시설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검사와 결과 공개를 통해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검사체계 구축과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담당기관 및 부서에서는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충분한 인력·장비·예산 확보와 충청북도교육청 및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급식시설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제정의 필요성 및 내용 측면에서 타당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검사와 검수를 실시하여 방사능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물질을 뜻하며,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삼중수소 등을 말한다.
2. “급식시설”이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 및 유통 관리와 연계한 검사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의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급식시설에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물질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사성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

- ② 방사성물질 검사를 위한 시료(試料) 수거계획은 충청북도 식품안전 업무 담당 부서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
- ③ 도지사는 검사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담당기관의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춘 실무 기구로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지사는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급식시설에 납품하는 식재료
- 2.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재료

③ 도지사는 담당기관이 방사성물질의 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포함한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담당기관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둘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료 수거 및 시험연구비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담당기관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정기 및 수시검사 등) ① 도지사는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② 정기검사의 항목은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로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외에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시설 외의 기관 및 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사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 및 수량, 주기 및 방식 등에 관한 사항
2. 급식시설 식재료의 생산 및 유통 관리 과정과 연계한 방사성물질 검사체계에 관한 사항
3.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시설 관계자 및 충청북도민에 대한 방사성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담당기관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검사결과 공개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식품안전 업무 담당 국장, 학교급식 업무 담당 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학부모단체, 환경단체, 교육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계 전문가
3.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의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자료조사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충청북도의 소속 행정기관 등의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관한 조치) 도지사는 식재료 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 즉시 급식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관계 행정기관 및 위원회에 알려 안전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 공개)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및 시·군에 통보하고, 충청북도청 및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방사성물질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등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조(유해물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농약
2. 중금속
3. 항생물질
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5. 병원성 미생물
6. 생물 독소
7. 방사능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물질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

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13.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식재료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매년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사전검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나 학교 직원의 검사의뢰가 있을 시, 이들의 의견이 검사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제1항의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이나 안내장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5.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유

- 본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 담당기관의 운영을 위한 인력, 장비 및 검사체계 구축, 그리고 정기 및 수시 검사를 위한 비용이 요구되지만, 이를 위한 대상의 구체적 범위, 방법,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이에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